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정관

제정 2019. 9. 10.

개정 2020. 2. 2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광진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근거) 재단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자양동)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획연구·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평가 및 실태조사
4.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 교육·연수 사업
6. 긴급 구호사업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7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예산 및 회계

제8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 과 같다. 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①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광진구의 출연금,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차입금) 재단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광진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13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조 (잉여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17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의 특성상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이사) 1명
2. 이사 14명(이사장 포함)
3. 감사 2명

②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선임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정해진 후보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이사는 광진구의 재단 소관국장이 된다.

③ 이사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이사선출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득한 후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① 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며,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감사는 광진구의 재단 소관과장이 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6.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퇴직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⑤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정관에 기재한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임명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7조(임원의 보수)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30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및 정원

31조(조직 및 정원)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 ·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35조(이사회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회를 둔다.

② 이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회를 두며 이사장,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분사무소의 설치, 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1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법령·조례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3월전까지 연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1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8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9조(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 해당 의안이 이사의 배우자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을 포함한다)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41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감사가 기명, 인감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4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재단은 제2조 및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정 관 변 경

제43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해 산

제4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9장 공고 및 공고의 방법

제47조(공고방법) ①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사항 공고는 광진구 관할구역 안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이나 광진구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후원금 등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말 까지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48조(정치활동 금지) 재단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9. 10.>

1조(시행일)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 일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20조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이사장 선임 시까지의 이사장의 직무는 복지환경국장이 대행한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0년 02월 25일